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78호
-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 외 21명
- 발의일자 : 2015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3일

2. 제안이유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본재산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소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고, 시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시의 재단법인 출연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4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가. 개정안 개요

-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의 근거를 현행 조례에 명확히 하는 한편

소관사무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재원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본재산) ① ----- -----.
1. 국가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자치구의 출연금 및 재산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2. -----
3. 사업 수익금	3. -----
4. 기타 수입금	4.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나. 출연의 근거

- 현행 조례의 적용을 받는 서울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2015년 1월 30일 지정·고시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임.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6호, 2015.1.30. 제정·시행)

서울시 출연기관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 출자기관 : 서울관광마케팅(주)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 ② (생략)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그런데 현행 조례 제4조는 서울시 출연 예술단체의 기본재산의 조성과 취득·처분 절차, 시 출연금 한도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출연의 근거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대로 출연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 현행 조례는 “국가·서울특별시·자치구의 출연금 및 재산”을 재원으로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여부를 떠나서 그 출연금을 재원으로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라. 수정의견

- 따라서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재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가 “출연금 및 재산”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출연금”만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개정안을 통해 기본재산 조성 재원을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법제실무상의 착오로 삭제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번지 소재 현재 재단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평가액 118억원 상당의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바 있으며

예술창작지원, 예술교육, 생활예술 활성화, 문화예술공간 운영 등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서울시가 부동산, 동산 등 현금 외 재산을 출연할 근거를 차단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므로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4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자치구의 출연금 및 재산 2. ~ 4. (생략)	제4조(기본재산) ① ----- ----- -----.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재산) ① ----- ----- -----.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 4. (개정안과 같음)

<서울문화재단 기본재산 조성 및 운영 현황>

(2015년 10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시출연금	50,000	30,000											80,000
우리은행			16,000		14,000	10,000							40,000
기금외		22	262		118	8	5	11		8			434
잉여금		350	399	598	892	2,744	484	2,450	1,122	3,493	2,136		14,668
원금지출								-1,960		-8,460	-9,550	-9,220	-29,190
적립실적	50,000	30,372	16,661	598	15,010	12,752	489	501	1,122	-4,959	-7,414	-9,220	105,912
누계	50,000	80,372	97,034	97,633	112,643	125,396	125,887	126,390	127,513	122,554	115,140	105,912	105,912

(부동산 11,802백만원 별도, 부동산 포함 총 117,723백만원)